



제390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군기교육 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
예외 규정 신설〉
■ 민홍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107929호)

2021. 8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박선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개정안의 입법취지	2
2. 적법성 심사시 예외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59조의2)	4
3. 징계 시 양형에 참작할 사유의 정비에 관한 사항 (안 제59조의4제1항)	6
※ 참고자료	9
1. 각 군별 병 징계 현황	9
2.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내역 및 처벌결과 현황	1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민홍철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1. 2. 4.
3. 회 부 일 : 2021. 2. 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,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,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 2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, 제59조의4제1항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입법취지

- 현행법상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군기교육을 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,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, 심의 대상자의 소행·근무성적·공적(功績)·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 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,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【신·구조문 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
제59조의2(인권담당 군법무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9조의2(인권담당 군법무관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</u>

현행	개정안
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<u>징계 사유</u>,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·⑤ (생략) 제59조의4(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)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, 심의대상자의 <u>소행·군무성적·공적(功績)·뉘우치는</u>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<u>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③ ----- 제2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적법성심사를 요청한 경우 징계 사유-----.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59조의4(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혐의</u> 당시 직책 및 계급, 비행이 군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<u>공적(功績)</u>, <u>뉘우치는</u> --. ② (현행과 같음)

2. 적법성 심사시 예외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59조의2)

- 현행법 제57조2항¹⁾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강등, 군기교육, 감봉, 휴가단축, 근신 및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. 이 중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는 군기교육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, 이는 “군기교육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신구속형 징계처분인 “영창”에 대해 실시하던 적법성 심사가 “군기교육”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임.
- 본 규정과 관련한 연혁을 살펴보면, 2020년 1월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서 병에게 부과하던 “영창”이라는 인신구속형 징계처분을 폐지하고 집체교육식 징계처분인 “군기교육”을 도입하였음. 이 과정에서 “군기교육”의 경우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 심사를 받도록 하여 징계심리 대상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이들의 인권을 보다 보호하고자 하였음.

1) 「군인사법」 제57조(징계의 종류)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, 군기교육, 감봉, 휴가단축,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2. 4.>

1.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.
2.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·훈련하는 것을 말하며,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.
3.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,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.
4.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,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.
5.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,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.
6.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.

【2020년 1월 법 개정시 신·구조문 대비표】

개정 전	개정 후(현행)
제59조의2(영창의 절차 등) ①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,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. ②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(이하 "인권담당 군법무관"이라 한다)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. 다만,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,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59조의2(인권담당 군법무관) 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(이하 "인권담당 군법무관"이라 한다)을 둔다. <삭 제>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,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<u>군기교육</u>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그런데 인신구속형 징계처분인 “영창”과는 달리 집체교육식 징계처분인 “군기교육”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덜하며,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는 등 현실적으로 적법성 심사가 힘든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또한, 현행의 징계체계 하에서 군기교육보다 더 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강등에 대해서도 적법성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님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3. 징계 시 양형에 참작할 사유의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59조의4 제1항)

□ 현행법 제59조의4제1항은 징계의결 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, 심의대상자의 소행·근무성적·공적(功績)·뇌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□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심의대상자의 비행행위와 무관한 근무성적은 양형 참작사유에서 삭제하고, 혐의 당시 직책 및 계급, 비행이 군 내 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 등을 참작하여 양정하도록 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【신·구조문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
제59조의4(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)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행위의 경중, 심의대상자의 <u>소행·근무성적·공적(功績)·뉘우치는 정도</u>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	제59조의4(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혐의</u> <u>당시 직책 및 계급, 비행이 군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--.</u>
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『공무원징계령』에서도 징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 등을 양형 참작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.

【『공무원징계령』제17조 신·구조문 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
제17조(징계등의 정도 결정) 징계등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, <u>근무성적</u> , 공적(공적), 뉘우치는 정도,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	제17조(징계등의 정도 결정)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<u>혐의 당시 직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</u> , 평소 행실, 공적(공적)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.

- 다만, 현행 『공무원징계령』 제17조와 같이 근무 성적이라는 구체적 자료 대신 평소 행실이라는 추상적 사유를 양형의 참작 사유로 규정할 경우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징계권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【참고자료】

1. 각 군별 병 징계현황

[육군]

가. 병 징계처분 현황

(단위 : 건)

연도	합계	강등	영창	군기교육	감봉	휴가제한 (단축)	근신	전책
2016	48,268 건	29	10,335	-	-	32,082	5,822	-
	100 %	0.1%	21.4%	-	-	66.5%	12.1%	-
2017	46,076 건	11	8,974	-	-	31,470	5,621	-
	100 %	0.0%	19.5%	-	-	68.3%	12.2%	-
2018	43,353 건	16	7,296	-	-	30,625	5,416	-
	100 %	0.0%	16.8%	-	-	70.6%	12.5%	-
2019	34,530 건	22	4,623	-	-	24,975	4,910	-
	100 %	0.1%	13.4%	-	-	72.3%	14.2%	-
2020 1.1.~ 8.4.	19,608 건	31	1,725	-	-	15,266	2,586	-
	100 %	0.1%	8.8%	-	-	77.9%	13.2%	-
2020 8.5.~ 11.30.	5,977 건	33	-	395	181	4,565	652	151
	100 %	0.6%	-	6.6%	3%	76.4%	10.9%	2.5%

나. 징계사유별 군기교육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합계	성실의무위반	복종의무위반	근무지이탈 금지위반	공정의무위반	청렴의무위반	비밀엄수의무위반	품위유지의무위반	법령준수의무위반	영리업무금지위반	기타
2020 8.5.~ 11.30.	395	32	115	2	1	2	44	185	10	0	4

[해군]

가. 병 징계처분 현황

(단위: 건)

연도	합계	강등	영창	군기교육	감봉	휴가제한 (단축)	근신	전책
2016	2945	9	1214	-	-	1490	232	-
	100%	0.3%	41.2%	-	-	50.6%	7.9%	-
2017	2983	9	1026	-	-	1648	300	-
	100%	0.3%	34.4%	-	-	55.2%	10.1%	-
2018	3339	19	1069	-	-	1840	411	-
	100%	0.6%	32%	-	-	55.1%	12.3%	-
2019	3286	49	800	-	-	1861	576	-
	100%	1.5%	24.3%	-	-	56.6%	17.5%	-
2020. 8.4.	2759	56	396	-	-	1850	457	-
	100%	2%	14.4%	-	-	67%	16.6%	-
2020. 8.5.~ 11.30.	1151	23	-	42	39	902	130	15
	100%	2%	-	3.64%	3.4%	78.36%	11.3%	1.3%

나. 군기교육 처분 인원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합계	성실 의무 위반	복종 의무 위반	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	공정 의무 위반	비밀 엄수 의무 위반	청렴 의무 위반	품위 유지 의무 위반	법령 준수 의무 위반	기타
2020 8.5.~ 11.30.	42		18			3	2	19		

[공군]

가. 병 징계처분 현황

(단위: 건)

연도	합계	강등	감봉	영창	군기 교육	휴가 제한 (단축)	근신	전책
2016	927 건	5	-	368	-	464	90	-
	100 %	0.5%	-	39.7%	-	50.1%	9.7%	-
2017	1021 건	1	-	478	-	470	72	-
	100 %	0.1%	-	46.8%	-	46%	7.1%	-
2018	1378 건	8	-	640	-	618	112	-
	100 %	0.6%	-	46%	-	44.8%	8.1%	-
2019	1619 건	6	-	397	-	1059	157	-
	100 %	0.4%	-	24.5%	-	65.4%	9.7%	-
2020 1.1.~ 8.4.	701 건	8	-	149	-	493	51	-
	100 %	1.1%	-	21.3%	-	70.3%	7.3%	-
2020 8.5~ 11.30.	514 건	12	10	-	111	351	27	3
	100 %	2.3%	1.9%	-	21.6%	68.3%	5.3%	0.6%

나. 군기교육 처분 인원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합계	성실 의무 위반	복종 의무 위반	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	공정 의무 위반	청렴 의무 위반	비밀 엄수 의무 위반	품위 유지 의무 위반	법령 준수 의무 위반	영리 무지 금위 위반	기타
2020 8.5~ 11.30.	111		10	4			54	35	8		

2.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내역 및 처벌결과 현황

○2018년

(단위 : 건)

부대별	적법성 심사 요청	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				징계권자 조치	
		적법	양정 부적정	징계사유 불해당	중대한 절차상하자	의견 존중	의견 부존중
국방부	293	136	149	1	7	195 (66.5%)	5 (1.7%)
육군	11,611	5,315	5,940	56	300	11,368 (97.9%)	244 (2.1%)
해군	1,282	620	628	3	31	1,091 (85.1%)	33 (2.5%)
공군	666	563	84	0	19	663 (99.5%)	3 (0.4%)
계	13,880	6,655	6,803	62	360	13,342 (96.1%)	287 (2.6%)

○ 2019년

(단위 : 건)

부대별	적법성 심사 요청	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				징계권자 조치	
		적법	양정 부적정	징계사유 불해당	중대한 절차상하자	의견 존중	의견 부존중
국방부	149	76	68	0	5	148 (99.3%)	1 (0.7%)
육군	8,514	3,746	4,476	29	263	8,356 (98.2%)	158 (1.8%)
해군	955	408	534	1	12	942 (98.7%)	13 (1.3%)
공군	482	383	91	4	4	471 (97.8%)	11 (2.2%)
계	10,100	4,613	5,169	34	284	9,917 (98.2%)	183 (1.8%)

○ 2020. 1. 1. ~ 2020. 8. 4.(영창적법성 심사 현황)

부대별	적법성 심사 요청	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				징계권자 조치	
		적법	양정 부적정	징계사유 불해당	중대한 절차상하자	의견 존중	의견 부존중
국방부	50	17	33	0	0	50 (100%)	0 (0%)
육군	2,931	1,208	1,629	10	84	2,883 (98.4%)	48 (1.6%)
해군	349	184	159	0	6	346 (99.2%)	3 (0.8%)
공군	169	147	15	2	5	168 (99.5%)	1 (0.5%)
계	3,499	1,556	1,816	12	95	3,436 (98.2%)	63 (1.8%)

○ 2020. 8. 5. ~ 2021. 3. 10.(군기교육적법성 심사 현황)

부대별	적법성 심사 요청	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				징계권자 조치	
		적법	양정 부적정	징계사유 불해당	중대한 절차상하자	의견 존중	의견 부존중
국방부	22	7	14	0	1	22 (100%)	0 (0%)
육군	2,249	1,142	943	9	155	2,213 (98.4%)	36 (1.6%)
해군	159	79	77	0	3	158 (99.4%)	1 (0.6%)
공군	200	191	2	0	7	200 (100%)	0 (0%)
계	2,630	1,419	1,036	9	165	2593 (98.6%)	37 (1.4%)